◀ 근로 계약서 : 예시 ▶

1. 서울시 성동구에서 실시하는 2015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(**연장**) 참여자의 근로계약은 아래와 같습니다.

2. 사업(업무)내용 등 근로조건

○ 사업(업무)내용 : 사업유형 및 10개사업명(예, 지역특화자원 활용형 / 지역전통기술복원사업)

○ 작업 장소 : 사업장소 명기(예,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장소)

○ 근로 기간 : **2015. 11. 1. ~ 2015. 11. 30./12. 18.**

○ 임금 등 급여조건

- 1시간 단가 5,580원(65세 미만 1일 27,900원, 65세 이상 1일 16,740원), 임금은 본인계좌 입금 지급
- 임금 지급방법 명기
  - 월급(다음달 5일 이내. 단, 5일자가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 지급)으로 지급
  - 지각, 조퇴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시간단위로 임금을 지급
- 1주(근로계약일부터) 개근시 주 1일의 유급휴일 부여
- 1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또는 1일분의 임금 지급(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계약 종료 시 지급) * 1개월 : 11.1일~11.30일 까지
- 1일 간식비 등 3,000원 지급(근무일에 한함)

○ 근무시간

- 월~금요일(1일 5시간), 휴게시간 : 12:00~13:00(1시간)
- 65세 미만 : 주 26시간 이내 근무
- 65세 이상 : 주 15시간 이내(주2일-반드시 근무요일 지정 또는 1일 3시간 이내) 근무
  - 단, 사업장 특성 및 사정에 따라 근로능력 미달자 등 근로시간 조정 가능

○ 중복 참여자 조치

-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전일제(주 30시간 이상) 일자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 금지 ***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임금환수 조치**

3. 기타 사항

○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, 지각, 조퇴, 음주,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시 사업참여를 불허 할 수 있음(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

○ 농번기 중에는 작업을 중단(30일 이내)

-작물의 유형에 따라 파종기와 수확기가 상이하므로 지역실정에 맞게 지자체별로 농번기를 피하여 사업기간을 결정

○ 참여자 심사 후 최저생계비 150% 초과 또는 재산이 2억원 초과 등 사업참여 부적격 자로 확인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함

○ 위에 게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『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』에 따라 시행되며,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 ·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2015. . .

서울시 · 성동구청장 (인)

※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,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은 모두 수용할 것을 계약합니다.

성명: 주민등록번호: (印, 서명)

근 로 조 건(안)

1. 성동구에서 실시하는 2015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(연장) 참여자의 근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
2. 사업내용 등 근로조건

○ 사 업 명 : 2015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(연장)

○ 작업장소 :

○ 근무기간 : 2015. 11. 1. ~ 2015. 11. 30./12. 18.

○ 임금 및 급여조건

- 시급 5,580원 (지급방식: 월 1회 본인통장 입금, 입금일: 익월 5일 이내)
  · 지각, 조퇴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시간 단위로 임금을 지급
- 월 ~ 금요일까지 개근 시 1일분 주 유급수당 지급
- 1월간 계속 참여 시 1일분의 일당(월차수당) 또는 유급휴가 부여
- 1일 교통비·간식비 등 부대경비 3,000원 지급(근무일에 한함)

○ 근무시간(주5일 근무 원칙):

- 주 25시간 이내(만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)

○ 휴게시간 : 12:00 ~ 13:00 (1시간)

3. 기타 사항

○ 지역공동체 사업참여 기간 중 재해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주의하고, 근로기간 중 은폐한 지병이 악화되는 경우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.

○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이를 위배할 시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.

○ 위에 게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『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행지침』에 따라 시행됩니다.

2015. . .

성 동 구 청 장

※ 본인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**근무수칙 및 근로조건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**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 **이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수용**할 것입니다.

배치부서(소속) : 과(동)

연락처: 사업참여자 : (서명)

「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」 참여자 출석부

사 업 명 : 사업 사업기간 : 2015. . . ~ 2015. . .

사업관리 부서 : 과(동) 사업관리 담당자 :

사업장 현장관리자(작업반장) : 근 로 자 : (성명) (주소)

구분	일	월	화	수	목	금	토
날짜		11.2.					
근로자							
작업반장							
사업담당							
근로참여		예) 정상근무	예) 결근				
날짜							
근로자							
작업반장							
사업담당							
근로참여							
날짜							
근로자							
작업반장							
사업담당							
근로참여							
날짜							
근로자							
작업반장							
사업담당							
근로참여							
날짜							
근로자							
작업반장							
사업담당							
근로참여							
월 결 산 ※사업관리 담당자가 직접	작업장 총 근무일수 : 20일						
	근 로 자	근무내역: 정상근무 일, 결근 일, 지각 회, 조퇴 회 *총 근무시간: 시간 ([20일*5(3)시간=)					

※ 출석 확인: 매일 근로자와 작업반장은 작업시작과 함께, 사업관리 담당자는 작업시작과 함께 또는 현장 확인·점검과 동시 실시